

연지급결제특약

(B2B구매카드대출용)

이 연지급결제특약(B2B구매카드대출용)(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과의 B2B구매카드대출 거래에 있어서 한국씨티은행B2B전자결제서비스이용약관(이하 “서비스이용약관”이라 합니다)에 추가하여 적용되는 특약입니다.

은행은 이 특약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판매기업 및 구매기업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목적)

이 특약은 은행과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간의 B2B구매카드대출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판매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물건 매매대금 금액으로서 매매계약서상의 결제예정금액을 말하며, 이 특약에 따른 연지급 결제, B2B 구매카드 대출금 인출 및 상환, 선지급 등의 기준이 됩니다.
2. “거래승인”이라 함은 은행이 구매기업의 요청에 따라 B2B구매카드대출에 의한 대출금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이 특약에 따른 연지급 결제를 보장할 목적에서, 대출한도, 신용공여기간 및 기타 조건을 심사한 후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 연지급 결제를 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카드실물은 별도 발행하지 않습니다.
3. “대출한도”라 함은 구매기업이 은행으로부터 B2B구매카드대출에 의한 대출(만기일전 또는 선지급 요청전의 거래승인 금액 포함)을 받을 수 있는 총 한도금액으로서 은행이 구매기업의 신용도, 담보 등을 고려하여 각 구매기업별로 별도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4. “만기일”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물건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날로서 제5조에 따라 은행에 통보된 날을 말하며, 이 특약에 따른 연지급 결제, B2B구매카드대출 대출금 인출 및 상환, 선지급수수료 등의 기준이 됩니다.
5. “선지급”이라 함은 은행이 제6조 제2항 또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판매기업에게 만기일에 앞서 연지급 결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선지급수수료”라 함은 판매기업이 은행의 선지급에 대한 대가로 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7. “신용공여기간”이라 함은 구매기업과 체결한 “추가약정서(B2B구매카드대출-구매기업용)”에 의한 개별 대출의 대출기간(대출일 - 상환일) 으로서, 은행이 구매기업의 외상구매 주기, 신용도, 담보 등을 고려하여 각 구매기업별로 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8. “B2B구매카드대출”이라 함은 은행이 이 특약에 따른 연지급 결제 용도로 이 특약 및 구매기업과의 별도 약정에 따라 구매기업에 대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9. “만기지급식”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별도 선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만기일 당일 은행이 구매기업 앞 B2B구매카드대출을 실행하여 판매기업의 결제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0. “자동할인식”이라 함은 판매기업의 별도 선지급 신청 없이도 결제예정일 당일 은행이 구매기업 앞 B2B구매카드대출을 실행하여 판매기업의 결제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서비스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B2B 구매카드대출)

- ① 은행은 B2B구매카드대출 대출한도, 신용공여기간 등 B2B구매카드대출의 주요조건에 관하여 각 구매기업별로 별도로 약정하기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이나 제1항의 별도 약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은 구매기업에 대하여 B2B 구매카드대출에 의한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대신에 판매기업으로부터 선지급수수료를 청구하기로 합니다.

- ③ B2B구매카드대출에 의한 대출금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대한 거래대금을 이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지급 방식으로 결제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제 4 조(거래승인)

- ① **매매보호거래인 경우에는**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으로부터의 거래대금 결제를 위하여 B2B구매카드대출을 이용하겠다는 의사(이하 “거래승인 요청”이라 한다)를 **결제예정일 또는 그 이전에 청구 또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은행에게 통지합니다.**
- ② **일반거래인 경우에는** 구매기업은 MP에서 체결된 매매계약내역을 **은행 앞 별도 통지 없이 자동으로 거래승인 요청한 것으로 합니다.**
- ③ 은행은 구매기업의 거래승인 요청에 대하여 거래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거래승인 사실을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합니다. 다만, 매매보호거래의 경우에는 은행의 사정 및 선택에 따라 판매기업의 지정 이메일주소로 거래승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이 구매기업의 거래승인 요청에 대하여 거래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비스이용약관의 지급지시 또는 지급위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⑤ 은행은 거래승인을 한 건에 한하여 이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매기업에게 연지급 결제할 것을 보장합니다.

제 5 조(만기일 통보)

구매기업은 MP로 하여금 은행에 만기일을 통보하도록 하거나 스스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은행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6 조(연지급 일반거래)

- ① 은행은 만기일(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에 거래대금 상당금액의 B2B구매카드대출 대출금을 판매기업의 지정계좌에 입금합니다.
- ② 판매기업은 만기일 직전 영업일까지 은행에 대하여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판매기업의 선지급 신청 시 은행은 거래대금 상당금액의 B2B구매카드대출 대출금에서 선지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판매기업의 지정계좌에 입금합니다.

제 7 조(연지급 매매보호거래)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만기일(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에 거래대금 상당금액의 B2B 구매카드대출 대출금을 판매기업의 지정계좌에 입금합니다.
 - 1. 구매기업이 인수통지예정일까지 구매물건인수통지를 하는 경우
 - 2. 구매기업이 동의하는 경우
- ② 판매기업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만기일 직전 영업일까지 은행에 대하여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판매기업의 선지급 신청 시 은행은 거래대금 상당금액의 B2B 구매카드대출 대출금에서 선지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판매기업의 지정계좌에 입금합니다.

제 8 조 (분쟁발생시 처리)

- ① 매매보호거래에 있어 구매기업이 인수통지예정일까지 은행에 구매물건인수통지를 아니할 때에는 은행은 만기일(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에, 거래대금 상당금액의 B2B구매카드대출 대출금을 인출하여 가상계좌에 입금합니다.
- ②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판매기업에게, **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매기업에게 가상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지정계좌 입금)합니다.
 - 1. 구매기업이 동의하는 경우
 - 2.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원인관계(매매계약관계)상 이를 판매기업에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판매기업이 동의하는 경우
 - 4.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원인관계(매매계약관계)상 이를 구매기업에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계약취소 또는 지급위탁취소 절차가 완료되는 경우
 - 6. 계약변경에 의하여 거래대금이 감액되는 경우
 - 7. 구매기업이 착오로 거래승인 요청을 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제 9 조(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공제)

은행은 제6조 및 제7조 또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판매기업의 지정계좌에 입금할 때에 결제수수료와 중개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B2B 구매카드대출 대출금 상환)

- ① 구매기업은 은행이 거래 승인한 건에 대하여는 당해 만기일(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 은행의 영업시간 종료 시까지 거래대금 상당금액을 지정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당해 B2B구매카드대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는 매매보호거래에서 구매기업이 구매물건인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② 구매기업이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B2B구매카드대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매기업은 당해 만기일(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여신한도거래약정서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체일수가 1일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일분의 연체이자를 징수합니다.

제 11 조 (거래승인 제한)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기업의 거래승인 요청에 대하여 거래승인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거래승인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1. 구매기업이 제10조 제1항에 따른 B2B구매카드대출 대출금 상환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대출한도를 초과하였거나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B2B구매카드대출 대출약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신용공여기간을 초과하여 거래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
5. **거래대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하여 거래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
6. 구매기업에 대하여 파산,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가 있거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구매기업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지속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7. **허위 가공거래 등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거래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
8. 판매기업 등록 등 이 특약에 따른 거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은행과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기업을 판매기업으로 지정하는 경우
9. **은행의 전산장애, 인터넷망의 장애,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0. 은행이 제6조 및 제7조 또는 제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매기업에게 지급할 채무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체납처분 등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1. 은행이 인수통지예정일까지 만기일 통보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12. **은행이 판매기업 또는 MP와 약정을 해지한 경우**
13. 구매기업에 관하여 은행의 여신한도거래약정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 기타 다른 사유로 은행이 판매기업 또는 구매기업과 별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 12 조 (변경처리 제한 등)

- ① 은행이 판매기업에게 만기일에 연지급을 하거나 그 이전에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재접수, 계약변경, 계약취소, 지급위탁취소 등의 변경처리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당해 사유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B2B구매카드대출을 실행하지 않기로 합니다.
 1. 계약취소 또는 지급위탁취소 절차가 완료된 경우
 2. 계약변경에 의하여 거래대금이 감액된 경우
 3. 구매기업이 착오로 거래승인 요청을 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제 13 조 (선지급수수료)

- ① 선지급수수료는 은행이 구매기업의 신용등급 및 담보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선지급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구매기업의 추가약정서 및 판매기업의 연지급결제 이용 약정서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선지급수수료를 판매기업이 선지급 신청 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제14조 (기타 사항)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비스이용약관과 상관습을 따르기로 하고, 이들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 서비스이용약관, 상관습의 순서로 우선 적용됩니다.